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름

-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 2. 연구원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전자 채용서류의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3. 비전자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후면에 첨부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메일(insa@kaeri.re.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경우에 따라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4. 연구원은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간 비전자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전자 채용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지체 없이 파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용절차법」 제11조 제4항에 의거해「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합니다. 다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따라 공공기록물로 등록·관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여 보존하고 폐기할 예정입니다.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섭수번호				섭수일사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반환을 청구합니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
								년	월	일

한국원자력연구원장 귀하

(서명 또는 인)

공지사항

청구인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